남북관계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 안 번 호	

동의연월일 : 2012. 7. 9
동 의 자 : 의 장

주 문

가. 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 로켓 발사 그리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경색된 남북관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북한 정권 등장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마련하고자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 내에 「남북관계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위원 수는 20인으로 한다.

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안이유

우리 국회는 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 로켓발사 그리고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국제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1년 2월 18일부터 2012년 5월 29일까지 남북관계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바 있음.

그러나 제18대 국회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2011년 12월 김정일의 사망이라는 북한 정치의 큰 환경 변화를 맞게 되었음. 이에 격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국민적 합의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우리 국회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